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령에”를 “육아휴직 및 법령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제2호 중 “7일”을 “5일”로 하고, “공무원외의”를 “공무외의”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에”를 “공무에”로 하고, 제9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제23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휴직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내지 제7항을 제 4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③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3】 과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자녀	1
출산	배우자	3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별표 4】

유산·사산공무원의 휴가일수표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개시
16주이상 21주이내	3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2주이상 27주이내	6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8주이상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3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통 장 자 녀 장 학 금 지 급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생중”을 “고등학생중”으로 한다.

제2조중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중 “뛰어난 자”를 “뛰어나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로 한다.

[별표1] 의 제증명등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2.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증명	1통	4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흑백도면)의 경우	1필지	1,000원
(나) 칼라발급 또는 별도도면 첨부인 경우	1필지	1,5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건	8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3)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	300원
(2) 선급금정산확인원	1통	3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00원
5. 기타제증명등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4)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	600원
(3)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원
2.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3)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20,000원
(4)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명칭, 구조, 이전)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2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치과기공소 인정, 이전신청 및 양수신고	1건	10,000원
3. 문화공보관계		
(1)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2) 유통관련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3) 유통관련업(복합유통·제공업)신고	1건	20,000원
(4) 유통관련업(복합유통·제공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6)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30,000원
(7) 종합·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	1건	15,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원
(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10)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11) 공연장 변경등록	1건	20,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1건	3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4. 부동산중개업관계		
(1) 법인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6,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8,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5. 석유판매업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6.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	1건	8,000원
(2) 구획어업 허가	1건	10,000원
(3)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500원
(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5,000원
(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800원
(6)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2,200원
(7)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8) 내수면어업 면허	1건	20,000원
(9) 내수면어업 허가	1건	20,000원
(10)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1건	6,000원
(11) 어업권 분할인가	1건	6,000원
(12) 어업권 변경인가	1건	6,000원
(13)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1건	9,000원
(14)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0원
7. 교통행정관계		
(1)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대	5,000원
(2)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대	5,000원
(3)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1대	5,000원
(4)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1대	5,000원
(5) 차고지설치확인서	1건	6,000원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5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를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시간이 500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와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단, 무료입장권은 발급일로부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는 총2회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0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는 총4회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직계가족은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에 한함)

제6조제1호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단체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모와 자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족이 동시 입장시 사용료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을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로
한다.

1. 도시가스사업기금수용가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제1항중 “가구당 400만원 이내”를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3퍼센트”
를 “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사업기금수용가 용자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HP)
시설내역	도시가스시설 설치주소			
	건물소유구분	자가, 전세	건물용도	주거용, 기타()
	건물형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상가주택, 기타		
	건물면적	(평 ㎡)	용자취급은행	신한은행서구청지점
용자요청금액			만원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수용가 시설설치용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시공계약서 사본 1부.